



동해어업관리단



수신 강원동해선박, 김영균 귀하 (우25710 강원도 동해시 해맞이길 215, 105동 401호 (목호진동, 목호주공아파트))

(경유)

제목 어선중개업 등록 취소 알림

1. 관련근거

- 가. 「어선법」 제31조의3(결격사유), 제31조의4(어선중개업등록의 취소 등) 및 제38조(청문)
- 나. 어업지도과-3954(2020. 4. 17.)

2. 귀하(강원동해선박, 김영균)에게 「어선법」 제31조의3 제4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「어선법」 제31조의4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등록번호	상호명(대표자)	처분 내용	처분일
2017-E010	강원동해선박(김영균)	등록 취소	2020.5.20.

<유의사항>

- 가.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,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해어업관리단에 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)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나.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끝.

